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국방안전기본법안

검 토 보 고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 제고〉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05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6
1. 제정안의 입법취지 검토	6
2. 제정안의 조문체계 검토	11
3. 주요 조문별 검토	14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14
2) 정의(안 제2조)	16
3) 적용범위(안 제3조)	23
4)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25
5)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안 제7조)	27
6) 국방안전관리 조직·인력(안 제8조 및 제9조)	36
7) 안전사고 예방 관리(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39
8) 기타 조문 정비사항 등	43
※ 참고자료: 「국방 안전 훈령」 제정 전·후 비교	4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3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2.
3. 회부연월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보호할 보호장비 부족 등 위험요소가 있었음에도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무리한 수중수색이 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군인과 유사한 직종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비교하면, 경찰 및 소방의 경우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안전, 보건, 복지 분야를 단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의 경우 안전 분야를 포함한 군인 복무 일반에 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건 분야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 분야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부대관리훈령」¹⁾ 제4편 사고예방을 근거와 「국방안전훈령」을 근거로 안전사고, 군기 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21년부터 ’23년까지 군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사망자 267명중 군기 사고 사망자가 211명, 안전사고 사망자가 51명임. 이 기간동안 육군의 사고를 예를 들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26명과 중상 165명 경상 65명으로 안전으로 인한 커다란 인명손실이 있었으며, 이는 군의 전투력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서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을 초래하는 이유중 하나로 나타났음.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업무에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부대관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국방부 및 국방부예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함(안 제3조).
- 다. 국가는 각종사고로부터 국방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정책 계획수립 및 집행, 안전 예방활동, 통계자료유지, 안전의식 확산, 안전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국방인력은 이 법에 따른 국방안전에 관한 시책을 준수하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 마.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국방부는 안전관리 조직, 기능별 임무와 역할은 국방부 조직편성에 맞게 부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편성, 임무와 역할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안전관리담당관이란 국방부 및 각급 기관에서 국방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 인력을 말하며 임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 아.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의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안 제10조).

자.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관계 부서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위험관리의 원칙을 설정학 안전사고 예방대비를 위해 안전사고의 유형과 안전사고의 등급을 설정, 위험성 평가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치와 안전기준을 설정, 안전 점검 및 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설치, 안전검사와 안전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타. 안전사고 보고, 조사 및 대응을 위해 안전사고 보고 절차를 정립하도록 함(안 제28조).

파.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을 위해 안전사고 조사의 원칙,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전사고조사의 수행, 조사결과 결과보고, 안전사고 정보공개, 안전권고, 안전사고 자료의 관리, 사고사례 전파 등을 정립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안전사고 대응 기구의 설치, 안전사고대책반,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절차 및 운영과 사망사고 처리 원칙을 정립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 거. 평가 및 환류를 위해 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및 관리,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운용, 국방안전정보의 연계·고유 절차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너. 안전성과 평가를 위해 안전성과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6부터 제47조까지).
- 더.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협력을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각급기관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용, 국방 안전의 날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 러. 대외적인 안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안전자문위원회 등의 운영과 대외 전문기관 교류·협력 강화 등을 하도록 함(안 제54조부터 제55조까지).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취지 검토

□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은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등을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많은 인명 손상이 지속되고 있어 군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복무여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국방인력이 근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방인력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인력 및 국방자산 등의 안전을 총괄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로 이해 됨.

□ 군인과 유사한 직종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비교하면, 경찰 및 소방의 경우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안전, 보건, 복지 분야를 단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표> 소방 및 경찰 관련 보건안전 법률의 조문체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소방관서의 장 의무)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찰·소방 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 지증진 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현황조사) 5년마다 경찰 공무원의 보건안전 등 현황에 관한 조사 실시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 행)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보건 안전 및 복 지 증진 (경 찰) / 소방 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 지 정책심의 위원회 등 (소방)	제8조(의료지원)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 절차 단축이행 등) 제9조(직원숙소 지원)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 영)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중앙 및 시·도 소방 심리지원단 설치 등) 제11조(소방보건의)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 영)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4장 소방 공무원 보건 안전관리 규 정 등	-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 리 규정 등)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 진단) 제17조(역학조사) 제18조(질병소건자에 대한 소방 업무 수행의 제한)

군인의 경우 안전 분야를 포함한 군인 복무 일반에 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건 분야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 분야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부대관리훈령」²⁾ 제4편 사고예방 및 2020년 12월 30일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³⁾ 등을 근거로 하여 안전사고, 군기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표> 군, 경찰, 소방 관련 안전·보건·복지 분야 법률 현황

구 분	군	경찰	소방
복무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안전 분야	- *부대관리훈령 **국방안전훈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보건 분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 분야	군인복지기본법		

2) 「부대관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국방 안전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특히, 2020년 12월 30일 국방안전관리에 관련된 산재된 훈령들을 통합하여 총 7장 11절 56조의 「국방 안전 훈령」이 제정·시행 되었음.⁴⁾

<표> 「국방 안전 훈령」의 제정이유

구 분	제정이유
국방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독립 훈령 필요	- 그 간 국방안전은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부대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각 부대(서)별로 안전 임무 분산 추진 - 복합적인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는 오늘날 국방 환경에서 통합적인 업무협력 필요성 증대
민간 및 외국군의 선진 안전제도 적용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선진 외국군 등에서 기도입·운영 중인 위험성평가, 안전진단 등 선진 안전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
고위험 임무·작전 등 국방 영역의 특수성 고려 필요	-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안전성 제고 등 군 고유의 환경에서 임무 수행 간 안전 제고를 위한 규범 정립 필요

<표> 「국방 안전 훈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정의, 적용범위, 책무 및 다른 국방부 행정규칙과의 관계 등 개념 명시 ○ 제2장 국방 안전관리 체계 • 협의체인 국방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각 부대(서) 및 안전관리담당관 역할 규정 ○ 제3장 국방안전관리계획 • 중장기 5개년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연단위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 제4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 안전사고 유형·등급 구분,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진단·검사·신고 등 예방제도 규정 ○ 제5장 안전사고 보고·조사 및 대응 •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등급별 부대(기관)의 보고·조사·대응 체계 규정 ○ 제6장 평가 및 환류 • 국방안전정보, 국방안전통계 관리 및 안전성과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체계 정립 ○ 제7장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협력 • 국방안전교육 등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안전협조를 통한 정책 발전 내용 규정
--

4) 참고자료, 「국방 안전 훈령」 제정 전·후 비교 참조

□ 그러나, 「국방 안전 훈령」의 제정·시행 이후 국방분야에서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적지 않은 인명손실 등이 발생하여 국방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적인 실행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방안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방 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입법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률 등의 조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① 제정안과 같이 「국방 안전 훈령」의 규정 사항들을 제정법률인 「국방안전기본법」으로 상향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과,

②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의 관계 입법례를 참고하여, 군인 복지 관련 사항을 규정한 「군인복지기본법」 등의 법률에 관련 안전 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법률 제명에도 ‘안전’ 추가)하고, 기타 사항은 하위 법령 및 훈령 등에 위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는바, 입법형식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제정안의 조문체계 검토

□ 제정안은 총 7개 장, 5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 국방 안전관리체계는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방안전관리 조직·인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국방안전관리 계획, 제4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는 안전사고의 분류, 안전사고 예방 관리, 제5장 안전사고 보고·조사 및 대응은 안전사고의 보고, 안전 사고 조사 및 기록, 안전사고 대응을 규정하고 있음.

제6장 평가 및 환류는 국방안전정보의 구축·활용 및 안전성과 평가, 제7장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협력은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안전 협조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은 시행일과 과학화 시스템 구축 완료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의 조문체계

장·절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등 책무) -제5조(국방인력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방 안전관리체계	제1절 국방안전정책조정 위원회 등	-제7조(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2절 국방안전관리 조직·인력	-제8조(안전관리 기능별 임무·현황) -제9조(안전관리담당관 지정)

장 · 절		조문
제3장 국방안전관리 계획		- 제10조(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11조(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 제12조(안전예산의 사전 협의 등)
제4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제1절 안전사고의 분류	- 제13조(안전사고의 유형) - 제14조(안전사고의 등급)
	제2절 안전사고 예방 관리	- 제15조(위험관리의 원칙) - 제16조(작전 상황 하 위험관리) - 제1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제18조(위험성평가의 지원) - 제19조(안전보건조치) - 제20조(안전기준) - 제21조(안전점검) - 제22조(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 제23조(안전보건진단) - 제24조(안전보건개선계획) - 제25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 제26조(안전검사) - 제27조(안전신고)
제5장 안전사고 보고 · 조사 및 대응	제1절 안전사고의 보고	- 제28조(안전사고 보고 등)
	제2절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	- 제29조(안전사고 조사의 원칙) - 제30조(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 - 제31조(안전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 제32조(안전사고 조사의 수행 등) - 제33조(안전사고 조사 결과 보고 등) - 제34조(안전사고 조사 정보 공개 등 통제) - 제35조(안전권고의 조치 등) - 제36조(안전사고 자료의 관리) - 제37조(안전사고 사례 전파)
	제3절 안전사고 대응	- 제38조(안전사고 대응 기구) - 제39조(안전사고대책반) - 제40조(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 제41조(사망사고 처리원칙)
제6장 평가 및 환류	제1절 국방안전정보의 구축 · 활용	- 제42조(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 - 제43조(국방안전통계의 생산 및 관리) - 제44조(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

장 · 절		조문
		운용) -제45조(국방안전정보의 연계 · 공유)
	제2절 안전성과 평가	-제46조(안전성과 평가 체계) -제47조(안전성과에 대한 포상)
제7장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협력	제1절 안전문화의 증진	-제48조(안전문화활동의 추진) -제49조(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0조(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제51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 -제5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 운용) -제53조(국방안전의 날 등)
	제2절 대외 안전 협조체계 구축	-제54조(국방안전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제55조(대외 전문기관 교류 · 협력 강화)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과학화시스템 구축)

□ 위와 같이 제정안의 조문체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제정안은 현행 「국방 안전 훈령」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훈령 제4조의 책무 규정을 제정안에서는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5조(국방인력의 책무)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세부 책무규정을 다르게 규정한 점 등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이하의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는 제명 및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등 책무) 등과 그 밖에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어 쟁점이 있는 주요 조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은 「국방안전기본법안」이라는 제명 아래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제 정 안
국방안전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각종 분야의 안전을 규율하는 여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의 적용대상은 액화석유가스, 수입식품, 총포·도검·화약류, 저수지·댐, 어린이 식생활, 생활주변방사선 등 물적 대상 또는 특정 분야의 전반을 규율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같이 인적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보다는 “보건안전” 등의 용어를 제명에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안전관리 관련 유사 입법례 비교]

구분	법률명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보건안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따라서 제정안은 인적 대상인 국방인력 및 물적 대상인 국방자산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안전 검사·안전 점검·안전 진단 등의 종합적인 안전 강화를 통해 국방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명에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2)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안전, 위험, 국방인력, 안전사고, 위험성평가 등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관리를 통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위험”이란 부상, 질병, 인명손실 등 부정적인 사고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3.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상 : 3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다. 경미상 : 5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4. “국방인력”이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나.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 다.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라.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소속 근로자 5. “국방자산”이란 국방목적으로 사용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 다. 그 밖에 국방부 및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해병대를 포

제 정 안

함한다) · 공군에서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 · 신체 및 국방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의식”이란 국방인력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
8.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그 판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안전기준”이란 국방자산 등의 제작, 획득,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 제도적 기준, 관리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10. “안전검사”란 개별 법률이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관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실태와 소관 자산과 작업방법 등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진단기관에 의하여 소관 자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 측정 · 평가하여 보수 · 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국방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4. “위험요인”이란 인원의 사망, 부상, 질병, 장비 · 재산의 손상 · 손실 또는 임무완수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조건을 말한다.
15. “위험관리”란 작전효과, 임무완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개인이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16. “위험성평가”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제 정 안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7. “위험성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8. “작업상 건강장해”란 취급 장비·자재, 물질, 소음, 기온·습도 등 작업환경 및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무 등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신체장애를 말한다.
19. “아차사고”란 실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다른 시·공간적 조건 하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정안은 “국방인력”을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①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 ③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④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먼저, “국방인력”의 정의와 관련하여,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준사관), 부사관(부사관) 및 병(병), 사관생도(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임.

한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서는 ①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②부사관 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③군무원 등도 정의 또는 적용범위 규정에서 현역 장병에 준하여 포함시키고 있음.

【“군인”의 정의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비교】

군인사법	군인복지 기본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u>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준사관), 부사관(부사관) 및 병(병)</u> 2. <u>사관생도(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u> 3. <u>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u>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u>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u>「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u>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u>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병)</u>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u>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u> 2. <u>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u> 3. <u>군무원</u>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이 현행 법률 중 군 관련 인력 정의 규정 중 가장 광범위하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군 관련 인력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③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④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소속 근로자 등⁵⁾을 추가하여 “국방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국방인력” 정의와 관련해서는 국방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인력의 적용범위를 규정할 필요성과 함께, 현행 법률의 “군인”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인력”의 적절한 적용범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2018년 9월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직근로자도 업무상 사망 시 순직이 인정되는 점도 함께 고려가 필요함.

□ 다음으로, “안전사고”의 정의(안 제2조제8호)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르면, “군안전사고”는 “의도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그 판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법률 중에서 “안전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둔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법 제2조제6호).

이 법에서는 제정안과 달리 “학교안전사고” 정의와 관련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원인”이라는 “의도성”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국방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안전사고”의 의미를 “임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도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를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위험성평가”의 정의(안 제2조제16호)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험성평가”를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대표적인 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⁶⁾ 및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3호의 “위험성평가” 정의규정⁷⁾이 있음.

두 규정 모두 “위험성평가”의 본질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안의 “위험성평가” 정의 규정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적용범위(안 제3조)

제정안은 적용범위를 ①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②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③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이하 “국직부대등”이라 한다)로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방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이하 “국직부대등”이라 한다)

□ 제정안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 및 국방자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범위를 국방부 소속 모든 기관 및 군 등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정법상 주요 안전조치인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안전교육 등의 의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규정⁸⁾되어 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제정안이 모두 적용

8)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방 등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입장임. 한편, 동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 670여개 조문에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되는 대상의 경우 중복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제정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중복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부처협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4)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제정안은 국가가 각종 사고로부터 국방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하고, 그 외에도 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대민지원 시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국가 등 책무) ① 국가는 각종사고로부터 국방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정책 계획수립 및 집행, 안전 예방활동, 통계자료유지, 안전의식 확산, 안전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방인력이 재난으로 인한 대민지원 시 안전한 가운데 대민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와 관련한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2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서 모든 영역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제정안의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보공개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3조제3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3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서 모든 영역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와 연계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안 제7조)

제정안은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안전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 안전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안전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사를 통하여 제기된 국방 안전 현안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간사는 군수관리관이 한다.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절차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먼저,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군수관리관을 간사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단, 민간전문가 2명을 의무적으로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국방부 소관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위원회들은 위원회의 구성(자격, 위원 수 포함) 등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참고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12명, 군인복지위원회 10명,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12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구성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비교]

법률명	조문 내용
제정안	제7조(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u>국방부 차관</u> 이 되고, 간사는 군수관리관이 한다.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명	조문 내용
	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u>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u>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2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u>국방부장관</u>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①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0인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u>국방부차관</u> 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2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u>국방부장관</u>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

법률명	조문 내용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u>22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u>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u>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u>소방청 차장</u>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다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방안전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으로 하여 통상적인 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7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간사를 통하여 제기된 국방 안전 현황”을 기타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국방부 소관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들은 기타 심의사항으로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 제7조제1항제5호는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비교]

법률명	조문 내용
제정안	제7조(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안전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 안전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안전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사를 통하여 제기된 국방 안전 현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

법률명	조문 내용
	는 사항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다음으로, 법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현행 「국방 안전 훈령」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2021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24년 제2차(‘25~’29)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제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표>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차수	심의안건 및 위원명단
2021년	제1차	(안건) ① '20년 안전정책 성과 및 '21년 계획 ② '21~'25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③ 안전사고 대응 및 후속조치 절차 정착 (위원명단) 차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보건복지관,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해군 안전단장, 공군 감찰실장, 해병대 군수참모처장
	제2차	(안건) ①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 ② '22년 안전관리집행계획(안) 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조치방안 (위원명단) 차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보건복지관, 정책기획관,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해군 안전단장, 공군 감찰실장·군수운영재난관리과장, 해병대 군수참모처장
2024년	제3차 (예정)	(안건) 제2차(‘25~’29)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안) (위원명단) 차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지능정보화정책관, 정책기획관, 방위정책관, 동원기획관, 보건복지관,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해군 안전단장, 공군 감찰실장, 해병대 안전단장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이와 관련하여, 훈령을 근거로 한 위원회와 달리 제정안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를 설치하려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1항10)에 근거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업무 중 ‘안전사고 조사’와 관련된 업무는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표> 「국방부조사본부령」의 설치와 임무 규정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10)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동법 시행령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그 외 기능에 대해서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¹¹⁾를 고려할 때 법률로써 해당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방부 내 ‘국방개혁위원회’ 등 기존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는 기존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안전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권고 사항의 이행 등 국방 안전관리 관련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로, 현재 국방부훈령인 「국방안전 훈령」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음.

6) 국방안전관리 조직·인력(안 제8조 및 제9조)

제정안은 국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조직, 기능별 임무와 역할, 안전관리담당관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안전관리 기능별 임무·역할) 국방부는 안전관리 조직, 기능별 임무와 역할을 국방부 조직편성에 맞게 부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편성, 임무와 역할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관리담당관 지정) ① 안전관리담당관이란 국방부 및 각급 기관에서 국방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을 말하며 임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안전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안전 관련 임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며 각급 기관의 지휘관으로 지정한다. 2. 안전관리관은 안전책임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시행 및 지도·감독 나. 안전검사·점검·진단 및 평가 총괄 다. 안전 교육 등 안전문화활동 계획 수립 3. 안전담당관은 안전관리관을 보좌하고, 각급 기관의 안전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확인·보고 등 대응 나. 안전사고 데이터 등 안전정보의 기록 및 관리 다. 국방인력 대상 안전 교육 실시 라. 안전사고 조사결과 및 안전신고 관리 마. 위험성평가, 안전검사·점검·진단 등 예방활동 바.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관의 편성과 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급 기관은 매년 1월 소관 안전관리담당관 현황을 최신화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 기존 국방부의 안전관리업무는 안전 및 사고 관련 분야는 인사복지실의 병영정책과, 재난 관련 분야는 자원관리실의 재난안전관리과 등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고, 각 군 본부의 업무도 인사, 군수 등 참모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었음.

□ 이에 제정안은 국방분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관련 조직, 기능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원화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¹²⁾ 등에 상응하여 안전책임관·안전관리관·안전담당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임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표> 안전관리담당관 체계 및 역할

구분	안전책임관		안전관리관		안전담당관
직위자	각급 기관의 지휘관	-	안전책임관이 지정	-	안전실무 수행 실무자
역할	안전 임무의 총괄 조정·통제		계획 수립, 지도감독 점검·진단·교육 총괄		초기사고 대응, 데이터 기록관리, 안전교육, 점검진단 등
「산안법」 비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1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 다만, 제정안 제9조제3항¹³⁾은 기관 내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보고 절차라는 점에서 국방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제9조 ③ 각급 기관은 매년 1월 소관 안전관리담당관 현황을 최신화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 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관리(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정안은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안 제17조 및 제18조), 각급 기관의 장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조치에 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며(안 제19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 안전관리대상 지정을 규정하고, 군에 맞는 안전기술기준 마련 및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주기적 점검·진단 책무 규정으로 안전사고 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 정 안

- 제1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하여 계속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사업자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용역사업을 주관하는 부대·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자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 결과, 부대·기관의 장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별 국방부 관계 부서에서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군사교육훈련
 2. 국방 무기체계 획득
 3. 탄약 및 폭발물 관리
 4. 국방·군사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8조(위험성평가의 지원)** ①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부대·기관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5. 부대·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6.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7. 전문가 양성

8.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여건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각급 기관 소속의 안전 부대·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안전 부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국방부는 그 추진결과 및 성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장비,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추락,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작업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기준) ① 국방부는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군의 분야별 위험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관계 부서에서 안전기준 정립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 무기체계
2. 국방·군사 시설
3. 군의 특수한 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4. 그 밖의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기계·기구·설비·물자 등

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국방부가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야 한다.

- ⑤ 국방 안전기준의 등록 및 안전기준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내용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점검) ① 각급 기관은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급 부대·기관에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내용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 및 안전지침서를 참조하여 부대 임무, 그 밖의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 참고자료를 작성·운영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작성·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각급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국방부 합동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부대·기관을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안전관리대상에 대하여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진단) ① 각급 기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위생, 질병 발생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소속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안전보건진단을 지시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분야별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 ☐ 제정안은 위험성평가·안전 검사·안전 점검·안전 진단이 주요 예방관리 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표>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체계

구분	위험성평가	안전 검사	안전 점검	안전 진단
시기	임무활동 수행 시	검사 주기 도래 시	정기 또는 수시	진단계획일정 또는 필요시
대상	국방임무 및 부대활동 내재한 유해위험요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 소관 자산 등의 유해위험요인	소관 자산 등의 유해위험요인
실시 주체	관련 임무 수행 및 감독자 등	개별법령상 지정된 안전검사 기관	관리기관 또는 상급기관	요건을 갖춘 진단기관 (국방부장관이 지정)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 ☐ 또한, 제정안 제20조(안전기준)제2항의 안전기준 정립을 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임무 영역은 별도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적·기술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고, 민간 산업과 유사한 작업 분야는 가급적 기존 법규 및 기준에 상응하도록 안전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8) 기타 조문 정비사항 등

□ “국방부 (부서명)” 등을 “국방부장관”으로 수정 필요

제정안은 다수의 제정문안¹⁴⁾에서 주어로 “국방부 (부서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인 “국방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세부적인 사항·절차 등은 “국방부령” 등에 위임 필요

제정안은 현행 행정규칙인 「국방 안전 훈령」의 규정사항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에 따라 제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기존훈령 사항에 해당하는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세부적인 사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훈령사항에 해당하는 규정들은¹⁵⁾ 하위 법령인 국방부령 등에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14) 안 제8조(안전관리 기능별 임무·역할), 안 제10조(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3항, 안 제11조(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제1항 및 제3항, 안 제17조(위험성평가의 실시)제4항, 안 제18조(위험성평가의 지원), 안 제20조(안전기준), 안 제22조(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안 제42조(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 안 제47조(안전성과에 대한 포상), 안 제49조(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1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 등

15) 기존의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세부적인 사항·절차 등을 규정한 안 제9조(안전관리담당관 지정)제3항, 안 제12조(안전예산의 사전 협의 등), 안 제33조(안전사고 조사 결과 보고 등), 안 제35조(안전권고의 조치 등) 등의 일부 규정들은 국방부령 등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안 부칙 제2조 과학화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 관련

제정안 부칙 제2는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이 법 공포 후 3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제정안 제44조제1항은 국방부가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관련 통계분석의 효율적 지원 및 기관간 국방안전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방부는 특정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검토, 행정절차와 정책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구축 완료 시점을 부칙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한바,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국방 안전 훈령」 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향 후
-----	-----	-----

① 국방안전 규범 체계화

근거 규정	분 산 * 안전 관련 국방부 행정규칙 26개(12개 부서)	「국방안전훈령」으로 통합 관리
협업체	-	신 설 *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차관 주관)
중장기 계획	- * 행안부 요청으로 작성해왔으나 근거 부재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5년)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매년)
안전사고 유형 분류	19개 * 사고장소와 사고형태, 기인물 등 기준 혼재	대분류 6, 세분류 23 * 미군 훈령 참고 하, 국방임무활동 토대 분류
성과평가 및 포상	각 군 규정 * 군별 규정, 대진단 유공 등 개별 사안 별 포상	통합 규정
안전교육	각 군 규정	통합 규정
대외협력	각 군 규정	통합 규정 * 국방안전자문위원 운용 및 통합적 대외협력 관리

② 안전사고 조사·보고·대응 개선

보고체계	인사 계통 보고 前 조치사항 부재	안전 계통 사고부대 필수 조치사항 명시
사고등급	3개 등급 * 극히 중한 사고, 중한 사고, 경한 사고	5개 등급 * 정량적 기준에 따라 A~E 등급
	물적피해 기준 불명확	물적피해 기준 구체화
조사체계	군별 조사 주체 상이 조사자의 권한 불명확	조사 주체 명시(안전사고조사위원회) 감찰권 수준의 권한 부여
사고 대응	사고대응기구 운영 * 사고대책반, 사고종합대책본부(「부대관리훈령」) 관계 훈령별 상이	주관 부서 이관(국방부 군수관리관) 사고대책본부 차관급 단일화 사고처리 주관부서 정립
후속조치	-	안전권고 신설, 총괄관리 책무 명시
기록관리	-	책무 절차 명시

③ 대내외 선진 안전관리 제도 도입

안전관리 담당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 국방부 지정의무 없음	신 설 * 안전책임관-안전관리관-안전담당관 체제
위험성평가	-	신 설
안전기준	-	근거 마련 * 분야별 국방 안전기준 발전 추진
점검·진단	각 군 규정	통합 규정
안전신고	각 군 규정	통합 규정
정보통계	-	신 설 * 세부 지침 추가 하달 예정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2020. 12.31. 배포)